

## 헌법집중 핵심암기장(제12판) 추록 (2026. 5. 기준)

P 217 기출 ○× 1), 2) 기출지문 “삭제” 또는 정답표시 “(×)” 수정\_헌법재판소법 개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2호, 2026. 3. 12., 일부개정]

P 221 쟁점 256. 본문 내용 대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바(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 제1호),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제청법원이나 헌법소원청구인이 **법률의 해석·적용**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종래 “법률의 의미는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되므로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한정위헌결정은 입법권에 대한 존중으로서 당연하므로, 이를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도 적법하나, 개별적 사건에서의 단순한 법률조항의 포섭·적용 문제를 다루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루는 것은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법률의 해석도 규범통제의 대상임을 명백히 하였다.<sup>152)</sup> 생각건대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결국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라는 점에서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에 대한 해석·적용권한은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므로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P 232 1. 본문 내용 대체\_조문 번호 수정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사건의 경우 위헌제청사건과 달리 당해 소송사건이 **정지되지 않아**(대법원 2007.6.18. 2007아12)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 당해 사건이 먼저 확정되는 경우가 발생하나,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재법 제75조 제8항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청신청시**에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면 재판의 전제성이 유지된다(헌재 1998.7.16. 96헌바33등).<sup>1)</sup>

## P 235 쟁점 271. 본문 내용 대체 및 기출 ○× 삭제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단독의 법률행위를 의미하는 최협의의 행정행위로서 전형적인 공권력작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헌법소원제도의 **보충성원칙**으로 인해 먼저 행정쟁송을 거쳐야 하고(헌재법 제68조 제1항),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재판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동조 제3항),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당 재판이 취소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4항). 행정소송을 거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관력과의 관계에서 불허되며(1997.12.24. 96헌마172 참조), 법 제75조의 환송 구조에 비추어 원행정처분의 병합 심리 및 직접 취소도 제한되거나 자제되어야 한다.<sup>2)</sup>

- 
- 1) ‘구체적 규범통제’인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은 종국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불복형 규범통제’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은 제청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2) 헌법재판소는 종래 “행정소송을 거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관력과의 관계에서 불허되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헌재 1997.12.24. 96헌마172 등). 재판소원이 도입된 개정법 하에서 행정처분의 구제절차는 ‘행정소송, 재판소원, 환송재판’으로 구조화되었는바, 원행정처분의 헌법소원금지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나, 예외적 직접 취소 법리는 법원의 환송재판권과의 관계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